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8.19.(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8월 11일

○ 회부일자 : 2003년 8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8. 19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06902호, 2003.5.29)에 의거 중평출장소가 중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道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529명 $\Rightarrow$ 2,382명 (Δ 14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2명 $\Rightarrow$ 1,315명 (Δ 147명)
 - 소방·대학·의회 의원 정원 : 변동없음
-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중 “출장소” 자구 정비
- 다른 조례의 개정 :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 정비
 -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운영조례 등 9건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독립자치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자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중평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2003. 5. 29일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06902호)이 제정 공포되어 2003. 8. 30일부터 중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지방자치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의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 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단서규정의 필요성과,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 유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부칙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함.
- 안 부칙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함.
 - ⑩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중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함.
 - ⑪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재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8. 19.

제안자 : 송은섭 의원의

1. 수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부칙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함.
- 안 부칙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함.
 - ⑩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중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함.
 - ⑪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함.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중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529명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62명 2. 내지 4 (생략)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외화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2,382명 1. : 1,315명 2. 내지 4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직속기관, 사업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충청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관리위원회 결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신설) (신설)	(개정안과 같음)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삭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개정안과 같음) ⑩ 충청북도의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중명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의 의회정사무감사및조사의 권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별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이 의한다”를 “별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이 의한다”로 한다.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이 의한다”를 “별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이 의한다”로 한다. 제106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이 의한다”를 “별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이 의한다”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529명”을 “2,38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62명”을 “1,315명”으로 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조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②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중 “시장, 군수, 중평출장소장”을 각각 “시장, 군수”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시장, 군수 및 중평출장소장”을 “시장, 군수”로 한다.

별표1 제목중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하고, 분야별 총무과란을 삭제하고, 분야별 안전관리과의 일련번호4 및 일련번호7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③충청북도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④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군·출장소(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시·군”으로 한다.

⑤충청북도순환수립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중 “시·군·출장소”를 “시·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⑥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출장소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⑦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시장, 군수, 중평출장소장”을 “시장, 군수”로 한다.

⑧충청북도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 군수”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의 제2항 보관요금료중 “시, 군, 출장소”를 각각 “시·군”으로 한다.

⑨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제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시·군·출장소”를 “시·군”으로 한다.

⑩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중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529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62명</u> 2 내지 4 (생략)	제2조 (정원의 총수) <u>2,382명</u> 1. : <u>1,315명</u> 2 내지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처, <u>직속기관</u>, <u>출장소</u>, <u>사업소</u>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u>직속기관</u>, <u>사업소</u>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90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충청북도에 중평군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중평군 설치) ①충청북도에 중평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 칭	관할구역
중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 도안면 일원

②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

부칙 <제6902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기관 또는 사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평군(이하 "중평군"이라 한다)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중평군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제4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 중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중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